

파주시 주택태양광(3kW) 지원사업 공고
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5-51호 「경기도 주택태양광(3kW) 지원사업 공고」와 연계하여 파주시 소재 단독주택 대상 주택태양광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「파주시 주택태양광(3kW)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4. 22

파주시장

1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'25년 5월 ~ 12월(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)
- 지원대상 : 파주시 소재 단독주택* 278가구
*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[별표1]에서 규정한 '단독주택' 소유자
- 지원내용 : 주택용 태양광(3kW) 설비·설치비 일부 지원
- 지원금액 : 1가구 당 주택태양광(3kW) 설치비의 70%^{도30+시40} 지원

2 지원대상

- 지원대상 : 파주시 내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에 따른 단독주택
- 신청자격 :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
< 주의사항 >

- 1) 건축물대장에 주 용도가 '주택'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
- 2)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,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(단,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)
- 3) 신축주택의 경우 설치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(설치기간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)
- 4) 전기설비(태양광 등) 설치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
- 5)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
- 6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- 7)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, 융·복합지원사업,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등 정부, 지자체로부터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(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 등)인 주택은 본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 불가
*산업통산자원부고시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제3장 제10조
- 8) 사업신청 및 진행, 사업취소, 설치확인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은 “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시스템(ggre100home.or.kr)”를 통해 진행

3 세부 사업유형

- 경기도-파주시 연계 사업 : 도비 30%, 시비 40%
 - 주택태양광 설치비의 약 70% 지원

4 지원기준

- 총 사업비 상한액 : 4,931천원
 - 주택용 태양광(3kW) 총 사업비는 상한액 4,931천원을 넘을 수 없음
 - ※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(신청불가)
- 세부 사업유형별 지원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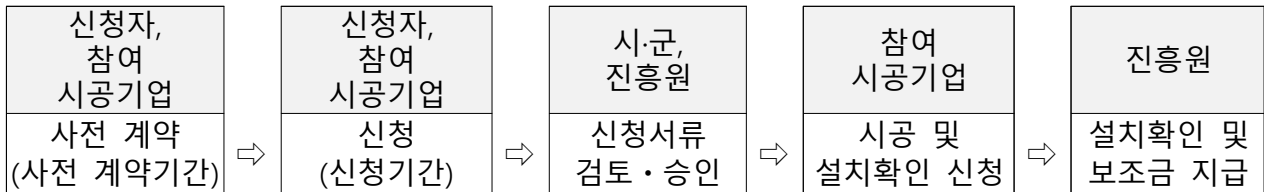
구 분	가구 수	총 설치비	지 원 금 (1 가 구 당)				자부담
			소 계	국비	도비	시비	
도-시군연계	278	4,931천원 (100%)	3,451천원 (70%)	-	1,479천원 (30%)	1,972천원 (40%)	1,480천원 (30%)

< 주의사항 >

- 1) 설비용량의 110%(3.3kW)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
 - 3.3kW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안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(비용수반)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
- 2)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3)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7.5% 이상 인증제품 설치
- 4) 저탄소모듈(탄소배출량 670kg·CO₂-eq/kW 이하로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)를 의무 사용
- 5) 태양광 주요자재(모듈, 인버터)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물을 통해 구매
 - 사업공고 연도에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

5 추진절차

○ 추진절차



※ 세부 사업 추진절차는 참고자료 참조

6 참여 시공기업

○ 참여 시공기업 자격

- '25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승인받은 기업으로 한정하며, 세부 사업유형별로 일부 상이

도-시군연계
에너지공단 참여기업
(경기도 소재, 본사 기준)

○ 조달 의무구매(참여 시공기업)

- 태양광 주요자재(모듈, 인버터)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(사업공고 연도에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)
 - ※ 조달등록제품 제조사가 참여 시공기업 자격으로 자사의 조달등록제품으로 태양광 주요자재(모듈, 인버터)를 설치할 경우 조달 의무구매 예외 인정함
 - ※ 미준수 참여 시공기업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

○ 참여 시공기업 회원가입

- 주택 태양광 지원시스템(ggre100home.or.kr)에 회원가입 후 신청 서류 및 증빙서류(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 협약서, 사업자 등록증, 생산물 책임보험, 참여기업 통장사본 등) 제출
- 진흥원은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참여 시공기업의 권한을 부여
 - ※ 주택 태양광 신청자와 참여 시공기업 간의 원활한 계약 등 업무진행을 위해 사전 계약기간 이전인 4.25일까지 회원가입 권고

7 신청방법

□ 참여 신청

○ 신청기간

구 분	사전 계약기간	신청 접수기간
도-시군연계	5. 7. 10시 ~ 5. 23. 17시	5. 26. 10시 ~ 5. 30. 17시

< 주의사항 >

- 1) 사전 계약기간 및 신청 접수기간 등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2) 사전 계약기간에만 계약이 가능하고, 신청서 작성은 가능 (“신청대기”)
- 3) 신청 접수기간에는 계약이 불가하고, 자가점검을 완료하고 신청서 제출 (“신청완료”)
- 4) 참여한 사업에 ‘사업승인’ 이후, 포기하는 경우는 공고 상 동년에 재신청이 불가하며, 타 사업유형으로도 참여 불가함
 - ※ ex1: 도-시군연계 ‘사업승인’ 이후 포기 → 도-시군연계 재신청 불가
 - ※ ex2: 도-시군연계 ‘사업승인’ 이후 포기 → 도 단독-일시납, 분할납 참여 불가
- 5) 사업 포기 등 잔여물량 발생시 추가 공고 할 수 있으며, 도-시군연계사업은 해당 시군의 잔여물량 만큼 추가 모집할 예정
- 6) 경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

○ 신청방법

-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(ggre100home.or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


○ 제출서류

-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제출서류 참고자료 파일 참조

□ **설치확인 신청**

○ 신청기간

- 주택 태양광(3kW) 설비 설치 완료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 확인증 발급 이후 설치확인을 신청
- 사업승인 이후 60일 이내에 설치확인을 신청 하여야 하며, 최대 10월까지 신청 하여야 함 (설치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적용)
※ 단,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가능 (기축은 30일, 신축은 60일까지 연장)
- 연장 승인 후에도 설치기간 내 설치확인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미비한 채로 설치확인 신청한 경우 사업 취소될 수 있음

○ 신청방법

-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(ggre100home.or.kr)을 통해 온라인 신청

○ 제출서류

-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제출서류 참고자료 파일 참조

□ 공통 유의사항

- 공고 내용 미숙지, 제출 서류 오기 책임은 해당 기업과 신청자에게 있음
- 신청자와 참여 시공기업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기도(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)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음
- 신청자 및 참여 시공기업은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
 - 신청자는 참여 시공기업을 선정하고 대상 설비의 성능 및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 및 결정. 경기도(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)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
- 사업승인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 할 수 있고,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신청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
- 사업승인 이후 60일 이내에 설치확인을 신청 하여야 하며, 최대 10월까지 신청 하여야 함 (설치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적용)
 - ※ 단,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가능 (기축은 30일, 신축은 60일까지 연장)
 - 연장 승인 후에도 설치기간 내 설치확인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미비한 채로 설치확인 신청한 경우 사업 취소될 수 있음
- 경기도 보조금은 참여 시공기업에게 지급하며, 이를 위해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 동의 하여야 함
- 경기도 지원금액 외에 경기도 28개 시·군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, 각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고에 따름
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(약칭: 공공재정환수법), 「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」 및 「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」 제출서류 및 추진과정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, 지원금의 부정이익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,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공표,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-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와 시공기준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음
-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, 융·복합지원사업, 에너지 자립마을 등 정부, 지자체로부터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주택(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 승인 등)은 본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
-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와 시공기준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음
- 참여한 사업에 ‘사업승인’ 이후 포기하는 경우에 포기 처리 이후 공고 상 동년에 재신청이 불가하며, 타 사업유형으로도 참여 불가함
 - ※ex1: 도-시군연계 ‘사업승인’ 이후 포기 → 도-시군연계 재신청 불가
 - ※ex2: 도-시군연계 ‘사업승인’ 이후 포기 → 도 단독-일시납, 분할납 참여 불가

□ 참여 시공기업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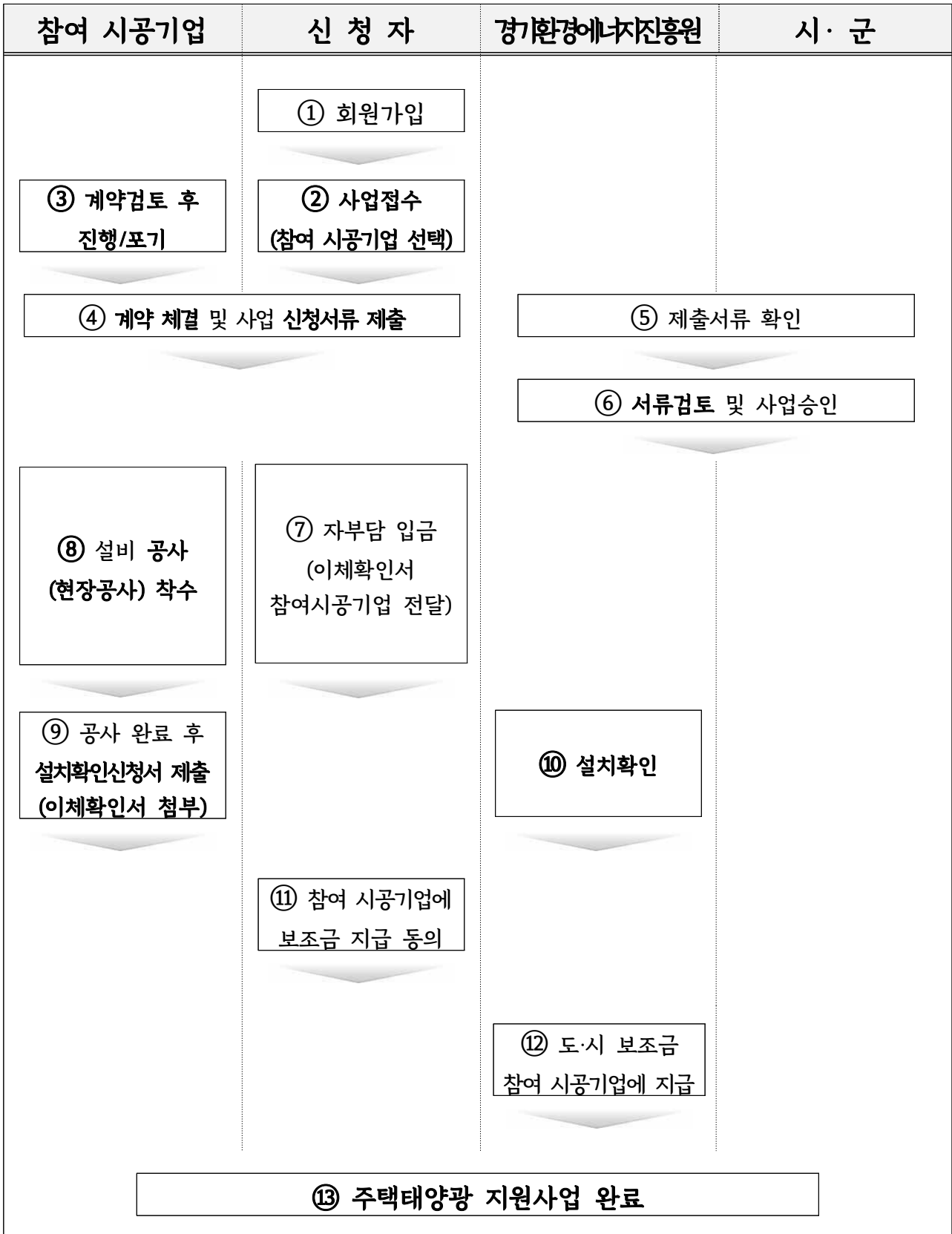
-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 및 「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」의 시공기준을 적용하고, 건설산업기본법,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」 제13조에 따라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인증제품을 반드시 사용 하여야 함
- 시공 완료 후,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함
- 참여 시공기업은 태양광 설비 준공 후 신청자의 자부담금 이체확인서를 포함하여 설치확인을 신청하여야 함
- 참여 시공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

□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규모, 지원내용, 접수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
- 문의처 :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(☎031-996-2557, 4654)
 파주시 기업지원과 RE100지원팀(☎031-940-8479)

참고 1

(도-시군연계) 지원절차 안내



참고 2

도-시군연계 사업 지원가구

□ 도-시군연계 사업 지원가구 : 1,684가구

※ 파주시 : 278가구

(단위: 천원, 가구, *3kW 설치 기준)

구분	시·군	지원 가구수	지원 금액	지원 비율
1	수원시	-	사업 미참여	사업 미참여
2	용인시	33	986	20.0%
3	고양시	30	1,452	29.4%
4	화성시	102	1,455	29.5%
5	성남시	37	987	20.0%
6	부천시	13	986	20.0%
7	남양주시	165	986	20.0%
8	안산시	-	사업 미참여	사업 미참여
9	평택시	46	1,440	29.2%
10	안양시	7	986	20.0%
11	시흥시	34	986	20.0%
12	파주시	278	1,972	40.0%
13	김포시	-	사업 미참여	사업 미참여
14	의정부시	45	991	20.1%
15	광주시	108	986	20.0%
16	하남시	22	1,068	21.7%
17	광명시	3	2,166	43.9%
18	군포시	10	1,275	25.9%
19	양주시	34	1,972	40.0%
20	오산시	5	1,152	23.4%
21	이천시	100	1,000	20.3%
22	안성시	186	1,286	26.1%
23	구리시	5	986	20.0%
24	의왕시	26	986	20.0%
25	포천시	79	1,479	30.0%
26	양평군	60	1,068	21.7%
27	여주시	50	1,250	25.3%
28	동두천시	46	986	20.0%
29	과천시	15	1,972	40.0%
30	가평군	25	1,080	21.9%
31	연천군	120	1,000	20.3%

※ 도-시·군 연계 사업 물량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동 가능

※ 시·군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·군 공고문을 참조